

의안번호	2215954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6.3.26.
추계번호	26C017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총 966억 7,1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3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준비위원회	10.8	-	-	-	-	-	-	-	10.8
설치비	-	3,092	29,944	31,035	-	-	-	-	64,071
운영비	-	-	-	-	6,803	8,264	9,633	7,889	32,589
합계	10.8	3,092	29,944	31,035	6,803	8,264	9,633	7,889	96,671

- 주: 1)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3)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4)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을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5)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 (목적)	○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 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4조(출연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1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16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7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교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0조 (국가의 재정 지원)	○ 국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및 학비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31조 (학비 등의 지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7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 제1항에 따른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33조 (교육 및 실습)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제1항)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다.(제2항)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제3항)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재량규정
9	안 제36조 (의무복무기관에 배치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항) 1.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2.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소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단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무복무의사를 대상으로 근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정하여 통보하고, 이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36조 (의무복무기관에 배치 등)	○ 제2항에 따라 배치된 <u>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u>(제3항) ○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및 기준,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보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10	안 제40조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재정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43조 (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은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이 해당 의무복무기관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2	부칙 제2조 (설립준비)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제1항) ○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제2항) ○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부칙 제2조 (설립준비)	○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4항) ○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5항)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6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14조(출연금)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른 무상 양여, 대부, 토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재정 지원 등의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1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4	안 제16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5	안 제17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6	안 제20조 (국가의 재정 지원)		

1) 강원대 1150만원, 경북대 900만원, 경상국립대 992만원, 부산대 1010만원, 전남대 626만원, 전북대 990만원, 제주대 1092만원, 충남대 963만원, 충북대 848만원 서울대 1,008만원 (자료: 대학알리미 2025년 대학(의과대학, 의학과) 등록금)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31조 (학비 등의 지원)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대학별 입학금과 수업료간 차이가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인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될 학생’의 비율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 참고로 2025년 국립대(법인포함) 의과대학의 등록금은 최고액은 1,150만원임(자료: 대학알리미)¹⁾
8	안 제33조 (교육 및 실습)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될 경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9	안 제36조 (의무복무기관에 배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보수 수준을 의무복무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10	안 제40조 (업무의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43조 (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12	부칙 제2조 (설립준비)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①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 ②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공포 후 30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부터 1년간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위원회 설립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하고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정안은 별도의 입학정원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1개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²⁾
 - 수업연한이 4년이므로 학생이 모두 충원될 경우의 총 정원은 400명으로 함
 - 안 제20조에서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운영)** 대학원대학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하며, 운영비는 신입생이 입학하는 2030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용은 공사비, 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및 기타투자비로 구성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건물의 설립부지는 제정안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토지매입비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
 - 건물 공사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은 제외하고 추계
 - 기타 투자비의 경우 집기비품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공사비와 기타 투자비는 교육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준용하며, 부대경비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
-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시하였으나, 제2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법 공포일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 보건복지부는 단일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투자와 집중 육성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국립의료기관,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 감염병·정신·중독·법의학 등 특수분야의 국가 인재로 활용할 계획을 밝힘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으로 함

- 2026년에 설치위원회를 운영하고, 2027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설계 실시,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건물 설립을 완료한 후, 2030년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의대 학사과정 운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4년 과정임을 고려하여 총 정원 400명이 모두 충원되는 2033년까지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설립준비(안 부칙 제2조)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 수에 회의수당과 회의횟수를 곱하여 산출함
 - (위원 수) 제정안에 따른 정원 10인 중 수당을 받는 외부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한 9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는 2026년에 총 6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2026년에 1,0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9명) × 회의수당(20만원) × 회의횟수(6회) = 1,080만

3)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합계	연평균
준비위원회 운영	10.8	-	-	-	-	-	-	-	10.8	1.35

주: 위촉직 위원은 총 9명, 수당 단가는 20만원으로 가정하고 회의 횟수는 2026년 총 6회로 가정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위원 구성과 수당 단가 및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는 공사비와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투자비)로 구성

- (의전원 면적)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⁴⁾과 의학계열 대학 위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캠퍼스 사례를 고려하여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하고 학생 수를 곱하여 추계
 - －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의 1인당 교사면적(기숙사 제외)의 평균인 44.5㎡를 준용⁵⁾하고, 입학 정원 100명에 해당하는 총 정원 400명을 곱하여 17,800㎡로 산출
- (공사비) 의전원 면적에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곱하여 산출
 - － 의학계열 대학교 최신 공사사례인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공사’⁶⁾ 단가 3,013,902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⁷⁾
-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공사비에 설계 효율, 건축감리 효율, 시설부대비 효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⁸⁾

4)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3] 교사기준면적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4㎡이나,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해당 계열의 대학이 만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다른 의과대학 중심의 캠퍼스를 기준으로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함

5) 의학계열 대학 위주로 설치된 캠퍼스로 국립의과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대구 중구),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있으며, 사립의과대학 중에는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가톨릭대학교 성의캠퍼스, 고신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가 있음. 도서관, 식당, 동물실험실 등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캠퍼스의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의 1인당 교사면적(기숙사 제외)의 평균인 44.5㎡를 적용함

6)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따르면, 동 대학교 공사(2023.12. 발주)는 지하 1층, 지상 4층, 2,050㎡, 공사기간 425일, 총 공사비는 152억원이었음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2022~2026년(1월 기준)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2.46% 적용

- 각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3종(복잡) 상급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중 요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설계비) 2027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비 요율 5.23%를 적용
-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 건축감리 대가요율 1.08%와 시설부대비 요율 0.23%를 적용하고 2개 연도(2028~2029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투자비) 총면적(17,800㎡)에 면적 당 이공학계열 집기비품비 단가⁹⁾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축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640억 7,100만원으로 추계

[표 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축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합계
공사비	-	29,557	29,557	59,114
부대경비	3,092	387	387	3,865
기타투자비	-	-	1,091	1,091
합 계	3,092	29,944	31,035	64,071

- 주: 1.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3. 건물 건립 비용에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운영

□ 의전원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항목과 동일하게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및 기타 투자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교직원 수)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 5]에 따라, 입학정원 100명(총 재학생 400명)일 때 의학교육과정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50명으로 가정¹⁰⁾

8) 건축비 500~1,000억원 사이 구간에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설계비는 5.07%, 감리비는 1.05%, 시설부대비는 0.21%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9) 집기비품비 단가는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른 이공학계열 집기비품비 단가(57,86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일반직원과 조교 수는 2026년 교육부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교원 대비 직원과 조교의 비율(봉급 지급 인원 기준) 36.14%, 17.80%를 각각 곱해 18명, 9명으로 가정¹¹⁾
 - 교원·조교·직원 채용은 신입생이 발생하는 2030년에 학생정원 4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직원의 50%(39명)를 확보한 후, 누적 재학생 수 증가에 연동하여 매년 12~14명씩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산출한 교직원 수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하고 기관부담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¹²⁾)을 합함
 - 2026년 교육부 확정예산 상 평균 인건비 단가(대학교수, 대학조교, 직원)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 비율을 적용¹³⁾
 - **(기본경비)** 인건비에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비율은 2026년 교육부 확정예산에 따른 국립대학 인건비 지원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 지원 예산액 비율(9.16%)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2024년 기준 국립대 의과대학이 보유한 실험실습기자재의 평균액을 3년(2030년부터 2032년)에 걸쳐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¹⁴⁾
 - 국립거점 의과대학 9개교¹⁵⁾의 평균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85억원, 2024년 말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의과대학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2030년부터 2033년까지 4년간 총 325억 8,900만원으로 추계

10)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의학계열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8명, 인문사회계열은 25명, 자연과학계열/예·체능계열/공학계열은 20명임

11) 교육부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교원 대비 직원 인원 비율(봉급 지급 인원 기준)은 36.14%. 교원 대비 조교 인원 비율은 17.80%.

12)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13) 안 부칙 제4조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14) 정부는 국립대학 보유 기자재 중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기자재에 대해서만 확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한 이후는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

15)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의 의과대학 실험기자재 보유 금액의 평균을 적용함

[표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0~2033년

(단위: 명, 백만원)

		2030	2031	2032	2033	합계
인 건 비	교직원 수	39	53	65	77	77
	(신규 채용 수)	(39)	(14)	(12)	(12)	
	금액	3,347	4,700	5,967	7,302	21,316
	기본경비	270	378	480	587	1,715
자산 취득비		3,186	3,186	3,186	-	9,558
합계		6,803	8,264	9,633	7,889	32,589

- 주: 1. 교직원 수는 새로 설치되는 의과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인 대학교수, 대학조교, 직원의 수로 2030년부터 모든 재학생이 채워지는 2033년까지 매년 재학생 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
 2.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각종 수당 및 기관부담금 제외)는 교육부 예산안의 2026년 인건비 단가(대학교수, 대학조교, 직원)에 기관부담금(사학연금 국가부담금 포함)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3. 기본경비는 2026년 교육부 확정예산에 따른 국립대학 인건비 지원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 지원 예산액 비율의 평균인 9.16% 적용하여 인건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4. 자산취득비는 국립거점 의과대학 9개교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의 평균값(85억원, 2024년 말 기준)에 203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966억 6,000만원으로 추계

[표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설치비	3,092	29,944	31,035	-	-	-	-	64,071
운영비	-	-	-	6,803	8,264	9,633	7,889	32,589
합계	3,092	29,944	31,035	6,803	8,264	9,633	7,889	96,660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

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